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1
----------	-----

제출일자 : 2000. 11. 28.
제출자 : 고성군수

1. 개정사유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2000. 1.28공포, 법률 제6236호)됨에 따라 동 법의 근거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 관련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내용)

부동산중개업사무소 등록에 관한 수수료 요율 신설(안 별표1)

3. 참고사항

근거 및 법령

-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중개업의 등록등) 및 제37조의3(수수료)
- 도 지적 업무연락(2000. 6. 21)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조례 참고자료

4. 본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 1중 구분란(인·허가,신고,신청,등록,확인등)의 8.회계관계 다음에 9.부동산중개업 관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부동산 중개업 관계		
(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0.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원
0.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중 재교부신청		
0. 법인인 중개업자	1건	5,000원
0.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3,000원
0. 중개인인 중개업자	1건	3,000원
(3) 분사무소 설치 신고		
0 법인	1건	2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